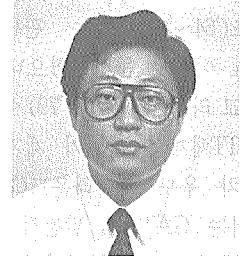


WTO체제의 진전과 우리 전자산업



정진우
본회 통상과장

1. 세계경제의 변화와 흐름

1) 세계경제 환경의 변화

종전 후 출범한 GATT(General Agreement on Trade & Tariffs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는 세계의 자유무역 확대와 경제발전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

그러나 '70년대 후반 들어 Oil Shock로 인한 경제불황으로 보호무역과 관리무역이 자리잡으면서 GATT의 역할과 기능에 문제제기가 일기 시작하였다.

1986년 우루과이 푸타 멜 에스테에서 시작된 제8차 GATT 다자간협상(일명 Uruguay Round)이 시작되어 7년간의 협상을 통해 1993년 제네바에서 UR협정을 체결한 바, 주요 내용으로는

- 공산품의 관세인하/시장개방 확대
- 농산물 교역의 다자간 협정

- 서비스 교역의 다자간 규범
- 지적재산권 보호의 무역 연계
- GATT규범 실현/교역의 공정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UR협정을 관할하는 국제기구인 WTO(World Trade Organization : 세계무역기구)가 1995년 1월 1일자로 탄생하면서 세계경제계에는 대변혁을 예고할 수 있었다.

예상되는 변화로는 GATT와는 달리 협정위반 회원국에 대한 강력한 제재(보복)조치를 허용함으로써 공정한 자유무역을 지향하고 있으며 동협정과 회원국의 법규 및 제도간 합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 추진사례로 Gray Area(회색지대 : 공정한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제반 법규 및 제도)의 점진적 철폐가 있는데 우리 전자산업계에서는 '96년부터 C-TV 대 EU수출

추천제와 중고품(중대형 컴퓨터 및 계측기기)수입추천제 등이 폐지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변화는 무역과 연계된 새로운 통상이슈(환경-GR, 노동-BR, 경쟁-CR, 투자-IR)의 출현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에게는 곧 휘몰아칠 태풍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다자주의적 교역규범과는 달리 1980년대에 본격화되기 시작한 지역주의의 확장은 배타적 경향에서 개방적 추세로 급팽창되면서 세계 경제변화의 큰 흐름으로 자리잡으면서 그 추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2) 경제 및 교역의 혼합체제 상존
 - 가. 다자주의체제의 출현
 - (가) GATT

1948년 설립 아래 다자간 협상을 통해 세계 자유무역 발전에 기여한 GATT체제는 제6차 캐네디 라운드('64~'67)까지는 관세인하가 주요 이슈로 등장하였으나 제7차 도쿄 라운드 ('73~'79)에서는 GATT체제의 회의가 폐기되었고 제8차 우루과이 라운드 ('86~'93)에서는 GATT의 발전적 해체로 WTO가 탄생하게 되었다.

관세인하와 보호주의적 무역장벽 철폐를 주요 목적으로 활동한 GATT의 의의는 수출의존도가 70%에까지 육박하는 우리 전자산업의 경우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그 누구도 이러한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나)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 Development : 경제협력개발기구)

엄격한 의미에서는 다자주의와는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세계 경제 및 통상환경에 주요 활동상을 보이고 있는 OECD는 전후 미국의 서유럽 원조계획에 의해 설립된 OEEC(서유럽 18개국)와 미국, 카나다가 모여 1961년에 OECD로 정식 발족됐다.

OECD 현황

	인구(천명)	면적(천ha)	교역규모 (10억불)
전 세계	5,759,277	13,435,089	8,526.2
OECD	993,278	3,472,086	5,830.9
비중(%)	17.2	25.8	68.4

특히 설립목적 중 하나인 다자적·무차별적 자유무역 조치를 통한 세계무역 확대는 산업교역에 큰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다. 모두

26개의 분야별 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는 OECD에는 무역위원회, 경쟁정책위원회, 고용·노동·사회 문제위원회, 국제투자 및 다국적 기업위원회, 자본이동 및 경상무역의 거래위원회 등에서 최근 협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새로운 통상이슈에 대해 활발히 논의되면서 New Round의 근원지로 주목되고 있다.

'95년말 현재 26개국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OECD에는 '95년 3월에 우리나라가 회원가입 신청을 하였고 금년 7월에는가입여부가 결정나게 된다. 그런데 회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중에 양대 자유화 의무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는 서비스와 자본거래가 자유화 의무 영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입여부에는 국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려 있는데 주로 긍정적 입장은 우리가 OECD에 가입을 함으로서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환경, 노동, 경쟁, 투자 등 New Round에의 적극적인 참여 기회를 활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반하는 의견도 만치 않은데 여기에는 가입의 전제조건인 권고의무와 양대자유화 의무 조건들이 우리의 산업과 경제현실을 고려할 때 너무 앞서가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의무이행에는 일시유보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결국 선진국으로의 진입은 개도국의 지위박탈로 이어져 크게는

기존의 GSP상실과 UR농산물 관세화 10년유예의 배제가능성, 그리고 기후변화 협약상 개도국의 자격 상실로 타율적 산업구조조정의 위험도 안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여하튼 OECD의 기능상 교역, 노동, 경쟁, 투자 등에 대한 선진국권에서의 논의는 다자주의의 결정판인 WTO의 전위대 역할을 강하게 내비치는 것으로 그 의미는 상당히 중요하다 할 것이며 가입 또한 원론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것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다) 경제분야의 UN-WTO

(1) WTO 개요

UR(이하 편의상 WTO로 칭)협정은 크게 전문, 16개의 조문, 4개의 부속서, 각료 결정 및 선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부속서에는 상품무역에 관한 다자간 협정,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무역정책검토제도, 그리고 4가지의 복수국간 무역협정(민간 항공기/ 정부조달/ 국제낙농/ 국제우육)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WTO에는 4대원칙이 있는데 여기에는

최혜국 대우원칙 : 특정국에 대해 타국가보다 불리한 교역조건 불부여

내국민 대우원칙 : 외국인과 내국인을 똑같이 대우

시장접근 보장 : 시장접근의 제한은 관세와 조세로만 가능

투명성 원칙 : 의사결정, 법제도 운용은 합리적이며 법, 자료는 공개원칙 등이다.

부속서에 포함되어 있기도 한 협약이지만 WTO에는 3대 협약이 있는데 여기에는

[GATT 1994]

기존의 상품무역관련 GATT 외에 농업, 동식물 위생검역, 섬유 및 의류, 교역관련 투자조치, 무역관련 기술장벽 등이 새롭게 추가

[GATS :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서비스관련 협정으로 사업/통신/건설/유통/교육/환경/금융/은행/건강/여행/운송/오락 기타 등 12개 분야

[TRIPS : Agreement on Trade –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기존 협약을 최저보호 수준으로 대폭 강화한 “국제협약 플러그” 방식으로 추진 등이 있다.

(2) 현황

회원국은 출발 초인 '95.1.1에는 76개국, 1년 후인 '95.12.31 현재에는 112개국으로 세계 교역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입 협상중인 국가들도 중국, 러시아, 대만 등 26개국으로 금년 말에는 150여개국이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구 및 조직으로는 격년으로 개최하는 최고 의결기구인 각료회의 ('96.12. 싱가폴)와 상품이사회, 서비스 이사회, 지적재산권이사회 등으로 구성된 일반이사회는 각료

회의의 비회기년도에 개최하며 일반이사회와 수평적 위치의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와 무역정책검토기구(Trade Policy Review Body)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 GATT와의 차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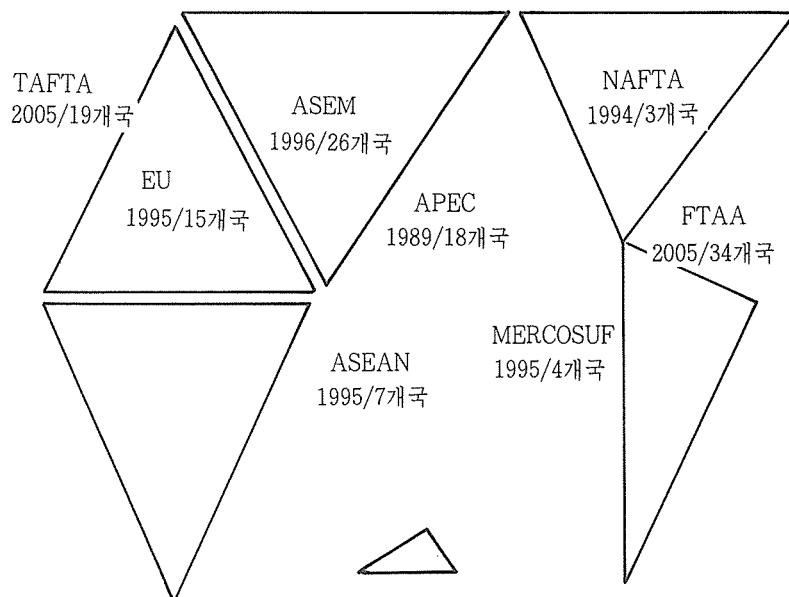
WTO와 전신인 GATT의 차이는 회원규모가 전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과 대상품목에는 예외가 허용되었던 농산물과 섬유를 포함한 상품교역외에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이 추가되었다는 것과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보호무역 조치의 철폐의무를 규정했다는 것과 IMF, IBRD와 같은 국제기구 성격을 띠었다는 것과 법적 구속

력이 뒷받침된 강력한 보복조치를 허용한 분쟁해결기구가 있다는 것과 새로운 통상이슈, New Round (GR, CR, BR, IR 등)들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는 것들이 예전의 GATT와는 현저히 다른 점들이며 이러한 특색으로 더 더욱 빛을 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4) 분쟁해결기구 제소 현황

교역 당사국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협의 요청에서 패널판정까지 최장 16개월, 상소시 20개월로 해결을 유도하며 패널레포트 채택부결을 만장일치로 합의하지 않는 한 부결되지 않는 역만장일치

지역주의 체제의 진전



제를 채용하여 예전 GATT에서의 만장일치 방식의 문제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난 한해동안의 제소 현황을 살펴보면 21건(미국 6건, 카나다 5건, EU 2건, 일본 1건, 기타 개도국 8건) 제소에 협상타결 4건, 패널구성 심의중 4건, 기타 협의 중에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제소된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이 '95년 4월에 수입농산물 검사제도와 관련하여 제소한 건이 협재 협의중에 있으며 역시 미국이 5월에 식품유통 기관과 관련 제소한 건은 이미 타결을 보았으며 카나다가 11월에 먹는 샘물과 관련하여 제소한 건은 양자협의로 완료된 상태이다.

위의 제소 상황을 볼 때 예전의 GATT체제 하의 '80년부터 '94년 까지의 분쟁관련 제소건수 120건 중 개도국이 제소자인 경우는 약 10%에 불과했으나 첫 해이지만 WTO체제 하에서의 개도국 제소케이스는 거의 4배인 40% 가까이 접근하고 있어 경제력에서의 약자에게도 손을 들어줄 수 있는 공정한 게임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기대감을 더욱 구체적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WTO체제 하의 첫 패널 레포트인 베네주엘라와 미국간 가솔린 분쟁이다.

베네주엘라가 미국을 제소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미국의 환경보호국(EPA)의 가솔린 재정제 요구규칙('95.1.1 발효, 오염방출량을 줄이기 위해 유황,

올레핀, 벤젠 등 유해물질 함유량 축소 요구기준)이 미국의 정유업자에게는 점진적으로 적용하고 수출업자에게는 즉시 적용하는 차별성(불공정한 편익) 제공과 환경 보호 저해가 수입가솔린에 의해 좌우되지 않음”

미국은 동 패널판정에 불복하여 상소기구에 항소중인데 이번 판정의 의의는 상소기구의 판정결과가 미국의 시정을 요구한다면 선진·개도국간의 공정게임 률의 정립은 물론 WTO의 위상도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나. 지역주의체제의 상존

(가) 지역주의체제 현황

자유무역 체제가 쇠퇴해 가던 '80년대 들어 배타적 지역주의가 본격화되면서 보호적무역주의가 강세를 보였으나 WTO체제 출범으로 개방적 자유무역의 색채를 띠면서도 지역주의의 경향이 더욱 복잡화·광역화되어 가고 있다.

유럽에서는 EU가, 미주에서는 NAFTA가, 아시아에서는 ASEAN과 한·중·일이 주축이 되어 상호협력과 경제를 하며 지역주의 체제가 TAFTA, FTAA, APEC, ASEM 등으로 혼합·확장되고 있다.

- EU(European Union)

1967년 EC설립(6개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베네룩스 3국)

1986년 스페인, 포르투갈 가입으로 12개국으로 확대(영·덴·아일/그리스)

1995년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가입으로 15개국 확대

-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 북미자유무역 협정)

1994년 미국, 카나다, 멕시코 등 3개국

1996년 회원 확대추진(칠레 가입 협상)

- MERCOSUR(남미 4개국 공동 시장 협정)

1995년 아르헨, 브라질,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4개국

1996년 칠레, 볼리비아 가입 협상

관세동맹 형식으로 역내 무관세와 역외 공동관세(16% 수준 -2006년)운용

- TAFTA(Trans-Atlantic Free Trade Agreement : 범대서양자유무역협정)

2005년 설립 목표, EU와 NAFTA의 통합

- FTAA(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 전미주자유무역지대)

2005년 설립 목표, NAFTA와 중남미 34개국 대상

-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1989년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경제협의체로 18개국의 회원, 매년 각료회의

1993년 제1차 정상회담(미국 시애틀)

1994년 제2차 정상회담(인도네시아 보고르, “보고르선언”)

1995년 제3차 정상회담(일본 오사카, “행동지침”)

- ASEM(ASia-EU Meeting : 아시아-유럽 정상회담)

1996년 EU와 ASEAN, 한·중·일 등의 정상회담

주요의제 : 정치안보, 경제협력, 기타

개방적 다자무역체제로 무차별적 자유화와 개방적 지역주의 표방

-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 동남아국가연합)

1967년 역내 정치 및 경제발전의 국가공동체(싱, 태, 말, 인, 필)

1984년 브루나이 가입

1995년 베트남 가입으로 7개국 회원

2000년 ASEAN 10(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 추가) 공동체 구축 목표

(나) 지역주의체제의 심화

EU는 21세기를 대비하여 다각적인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99년까지 중앙은행 창설과 통화 통합에 합의했으며 2005년까지 NAFTA와 MERCOSUR 그리고 2010년까지 지중해의 12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을 확대키로 했으며 또한 최근 부상하고 있는 아시아와도 미국 중심의 APEC에 대응키 위해 ASEM을 개최하여 지역주의의 확대를 꾀하고 있다.

NAFTA는 미국의 자본과 기술, 카나다의 지원, 멕시코의 노동력과의 효율적 통합을 취지로 1994년에 정식 출범하여 현재 칠레와 신규 회원국 가입 협상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으며 2005년까지 범

미주 34개국을 한 데 묶는 FTAA, 그리고 EU 등과의 자유무역협정 확대에 2010년까지 APEC내의 선진국간의 자유화 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APEC은 미국 주도 하에 아시아, NAFTA, 대양주 등의 18개국 가의 지역경제협력체의 성격으로 1989년 아·태지역 최초의 정부간 다자협의 포럼으로 출발했으며 각료회의는 매년 개최하며, '93년부터 시작된 정상회담의 의의는 포럼에서 구체적 협의체 성격으로의 전환점이 되었다.

특히 보고르 선언과 오사카 행동지침은 APEC의 구체화의 그룹과 내용을 일구어 내기도 하였다.

- 1994년 인도네시아 보고르정상회담의 선언내용

APEC내 선진국은 2010년까지, 개도국은 2020년까지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달성한다.

- 1995년 일본 오사카 정상회담의 행동지침(Action Agenda)내용

제1부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와 원활화 원칙과 특정분야조치

제2부 경제 및 기술협력

9가지의 자유화와 원활화 원칙(포괄성/WTO일치성/형평성/무차별/투명성 등)과 15개 분야의 특정분야 조치(관세/비관세/서비스/투자/지적재산권/경쟁정책/분쟁조정 등) 그리고 경제 및 기술 협력(인적자원 개발/ 산업과학기술/중소기업/경제인프라/에너지/통신정보 등 13개분야) 등이 주

요 내용으로서 2020년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회원국간의 사회·문화적 이질성과 다양성 극복이 최대 관건이 되고 있으며 회원국간의 추진전략의 조화 역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다) 지역주의체제의 향후 전망

지역주의체제의 심화된 경향은 기존의 지역경제블록에서 자유무역협정과 광범위한 경제협력으로 압축되고 있으며 동시에 WTO라는 세계 경제규범에의 일치화를 지향하고 있는데 지역주의체제의 발전은 선진국인 미국과 EU 그리고 최근 부상하고 있는 아시아 등과의 주도권 경쟁과정(경쟁과 협력의 양면성 계임으로 표출)에서 WTO라는 큰 울타리를 완성하는 가교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 WTO체제 정립과 새로운 통상 이슈 확산 현상

(가) 새로운 통상이슈 출현

WTO체제의 정립과 함께 새로운 통상이슈, 즉 New Round들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94년 4월 마라케쉬 각료회의에서 WTO 내에 무역과 환경위원회의 설치를 합의하고 금년 12월 싱가폴 각료회의에서 논의결과를 제안토록 결정하였으며 추가분야로는 투자와 경쟁정책 등을 선정하였으며 노동기준은 합의도출에 실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WTO 체제에서도 GATS, TRIPS, TRIMs, 정부조달 등에 외국인투자 조항이 있으며, GATS, TRIPS에 경쟁정책 관련 조항이

있어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국내에서도 최근 OECD 가입과 관련된 제도정비 차원이기는 하나 각종 규제완화와 노사간의 쟁점이 되었던 복수노조 문제, 제3자 개입 등의 노동기준의 개정 검토작업도 이의 여파로 보아도 무방하다 하겠다.

(나) 뉴 라운드 논의 내용

○ 무역과 환경문제

(-Green Round)

환경을 이유로 한 무역조치 또는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조치를 무역 및 환경규범에서 수용하자는 내용으로 EU 집행위의 Sir 레온 브리텐 부위원장은 제품의 환경 위해성은 물론 생산공정의 위해성까지도 포함하자는 제안을 하여 환경보호 또는 환경 기술의 정도에 따라 무역장벽이 높아질 전망이다.

○ 무역과 노동기준

(-Blue Round)

무역과 노동기준 문제가 다자간 규범화가 되지는 못해도 핵심노동기준의 보호관련 OECD 권고안이 만들어지면 대다수 회원국에는 상당한 압력이 될 것이다.

핵심 노동기준으로는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 아동노동보호, 강제노동금지(노동권보호), 고용차별금지 등 ILO 협약 중 일부로서 우리나라 '91년 ILO에 가입하였으나 위의 기준에는 가입하지 않아 과급정도가 클 것으로 보인다.

○ 무역과 경쟁정책 문제

(-Competition Round)

무역과 경쟁정책의 핵심 내용은 경쟁조건의 평준화로서 현재 OECD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USTR대표가 WTO 투자에로 총장에게 국제거래에서의 뇌물 및 부패관행 문제 논의를 WTO내에 정식 촉구함으로서 미국이 동 문제를 공식 거론하였다.

그에 의하면 '94년 4월부터 '95년 5월까지 미국의 외국기업의 뇌물관행으로 450억불의 계약체결 실패(손실)을 경험한 것으로 주장하기도 하였다.

특히 동규범화의 샘플은 미국의 통상법 301조가 원용될 가능성이 커 우려가 되고 있다.

○ 무역과 투자규범문제

(-Investment Round)

기업의 범세계적 투자활동 촉진을 위해 포괄적이고 구속력 있는 투자규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현재 OECD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자간 투자협정(MAI)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역시 이의 궁극적 목표는 외국인투자 업종의 지속적 개방확대와 내국민대우의 엄격준수라 할 수 있으며 이는 OECD의 가입과 동시에 자동연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2. 우리 전자산업의 통상현황과 대응 방안

1) 전자산업의 수출과

경제발전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 현실에서는 수출만이 경제발전의 관건이었으며 전자산업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LG전자의 트랜지스터 라디오 62대(594 \$ 상당)를 미국의 아이젠버그사에 수출한 것이 전자제품으로는 수출의 효시였던 우리 전자산업이 정부의 수출 드라이브 정책에 힘입어 경제발전의 견인차가 된 것이 전자산업의 국민경제

전자산업 수출동향

(단위 : 백만불)

	1962	1970	1980	1990	1994	1995
총 수 출 (A)	55	835	17,505	65,016	96,013	125,028
전 자 수 출 (B)	0.491	55	2,004	17,224	30,953	43,592
비 중 (B / A)	0.9	6.6	11.4	26.5	32.2	34.9

주요국의 전자산업 생산동향

(단위 : 억불)

	전자생산	가정용	산업용	부 품
미 국	2,408	66	1,747	595
일 본	2,151	274	1,103	774
독 일	437	31	308	98
한 국	334	71	93	170
영 국	280	19	210	51

적 의의라 할 수 있다.

1977년에 10억불 수출을 이룩한 전자산업은 10년만인 '87년에 100억불 수출을 이루고 그 여세를 몰아 '92년에 200억불, '94년에 300억불, 마침내 지난해에는 435억 9,200만불 수출을 이루면서 18년만에 연평균 성장을 23%라는 놀랄 만한 성과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수출성장이 밀거름이 되어 우리 전자산업이 세계4위의 생산국으로 성장하게 되면서 가정용은 세계 2위, 산업용은 세계 9위, 부품은 세계 3위의 자리매김을 하면서 우리 전자산업은 세계 속에 「Made In Korea」라는 나래를 펼치고 있다.

2) 선진국의 수입규제 현황

가. 현 황

(단위 : 건)

품목	미국	EU	중남미
C-TV	○	○	○
VCR		○	
MWO		○	○
Car Stereo		○	
CPT	○	○	
V-Tape		○	
A-Tape		○	
전자저울		○	
반도체	○	○	
3.5"FDisk		○	
키플 시스템	○		
Capacitor		○	
계	4	11	2

나. 미국의 수입규제(반덤핑 - 연례재심 특성)

순수 미국자본의 C-TV업체는 LG전자의 Zenith사 인수로 전무한 미국의 경우 한국산 C-TV의 경우 '83년에 제소당해 12차 연례재심까지 이르고 있다.

'86년에는 CPT까지 제소당했으나 '96.3월 현지 제소자의 재심 요청으로 미소 마진임에도 불구하고 철회 요청이 받아 들여지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특히 '95년 8월에는 A/D관세부과증인 C-TV를 멕시코 공장을 통해 우회 수출한다며 제소(3개 노동조합 제소)하여 현재 조사중인데 우회수출의 경우 WTO 협정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해 현재 우회덤핑 협상을 준비중인데 제소를 하여 우리의 수출업계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규 A/D는 어려운 현실에서 우회(Circumvention)덤핑을 계발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선진국의 수입 규제 패턴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다. EU의 수입규제(반덤핑 - 5년간 Sunset Close 특성)

우리 전자산업 수출이 급증한 '80년 중반부터 EU에게 집중 견제를 받기 시작하여 '86년에 MWO, VCR이 제소당했고 '87년에는 CDP, C-TV, 비디오Tape 등이 '88년에는 오디오Tape가 그리고 '90년에는 Car Stereo, DRAM이 '92년에는 전자저울, 3.5" FDisk Capacitor(대형) 등이 속속 제소 대열에 끼게 되었다.

C-TV의 경우 '87년에 16"이하의 소형제품이 제소되어 '90년에 확정판정을 받아 A/D관세를 물고

나가던중 '92년에는 17" 이상의 중대형제품이 다시 제소되어 중대형은 '95년 3월에 확정판정을 받았으며 소형은 '95년 4월에 재심개시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95년 4월 중대형을 합쳐 C-TV전체를 확대재심으로 끌고 갔다.

여기에는 절차상의 문제와 동종제품 여부 등의 어려운 문제가 있었으나 EU집행위는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아전인수식으로 법제도를 운용하고 있기도 하다.

미국에서도 A/D의 새로운 규제 형태인 우회수출 방지(Anti-Circumvention)제소로 나타났듯 현재 MWO의 경우 반덤핑이 확정되었는데도 또 다시 우회 제소설이 유력하다.

라. 중남미의 수입규제

멕시코가 우리의 냉장고를 '93년 4월에 A/D로 제소한 후 조사하였으나 '94년 11월 무혐의 결과로 판정이 났다.

아르헨티나에서도 '92년에 C-TV를, '94년에 MWO를 제소하였는데 동 A/D는 아르헨티나의 대한 적자가 심화되는 현상을 쇠고기 수출로 타개하려는 아르헨티나의 쇠고기 수출요청을 허용치 않자 일종의 보복성 조치로 A/D를 발동하기로 하였다.

마. 수입규제의 영향

전자산업 수출 435억 9,200만불 중 수입규제를 받는 품목의 수출은 121억 2,213만불로 약 28%의 비중으로 전자수출의 30%가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전자수출

지역별 전자산업의 수출 동향비교

'85년		(단위 : 백만불, %)	'95년	
(100)	4,352	전 자 수 출	43,592	(100)
(22)	941	아 시 아	17,016	(39)
(62)	2,680	북 미	14,074	(32)
(13)	558	유 럽	8,878	(20)
(4)	173	기 타	3,624	(9)

135억 1,100만불 중 약 60%인 80억 4,844만불이 규제중인 상태이며, EU의 경우 75억 2,400만불 중 53%인 40억 1,872만불이 규제중으로 수출의 비중이 미국과 EU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없는 아시아로 수출패턴이 바뀌면서 아시아로의 수출비중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으로 '85년의 전자수출비중이 아시아가 22%에서 '95년에는 39%로 급신장하고 있다.

바. WTO체제하의 새로운 교역규범과 우리 전자산업

①. 선진국의 통상정책 강화

(가) 미국의 통상정책

미국 대통령선거의 주요 이슈로 통상현안이 부상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지난 해외무역적자가 사상 최대인 1,755억불인 것도 큰 작용을 하였다.

미국에는 수출증대 전략을 크게 2가지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다.

하나는 개도국에의 수출증대 전략이요 또 다른 것은 선진국에의 수출증대 전략이다. '94년에 수립한 선진국시장을 타겟으로 한 NES(National Export Strategy : 국

가수출전력), 개도국에의 수출증대 전략은 BEM(Big Emerging Markets)정책이다. '94년에 수립한, 세계 주요 12개국의 부상하는 시장을 대상으로 짠 수출증대전략으로 중국, 홍콩, 대만, 한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6개국과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등 중남미 3개국 그리고 터키, 폴란드 등 유럽 2개국, 남아공화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USTR내에 기존의 무역협정 이행 감시기구가 상설화되어 교역국과의 무역관행 감시와 또 그 결과를 Super 301조, Special 301조, 종합무역법 1377조(통신)과의 적절한 연계를 이루어 기존의 무역협정 이행의 극대화를 이루어 무역적자의 보전책으로 활용할 계획을 내비치고 있다.

또한 USTR은 금년 12월 WTO 각료회의(싱가폴)에서 환경, 경쟁, 투자, 노동 등 뉴 라운드의 본격적인 논의를 제안할 계획으로 있다.

미국은 EU와 컴퓨터, 소프트웨어, 반도체, 부품 등의 관세장벽 철폐협상 즉 ITA(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 정보기술협정)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가전제품 포함을 주장하고 이에 비해 EU는 표준화, 인증, 지적소유권 등의 포함을 주장하여 난항을 겪고 있는데 지난 4월에 일본 고베에서 선진 QUAD(미국, EU, 일본, 캐나다)회의가 열고 논의하였으며 이문제는 12월 WTO각료회의에 의제로 상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 EU의 통상정책

금년 3월 EU집행위의 한 대외통상전략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EU의 통상정책을 가늠할 수 있게 된다.

“제3국 시장의 장벽 제거에 역점을 두고 금융서비스, 통신, 해상운송, 원산지, 서비스, 관세, 공공조달 등의 폐쇄시장 개방에 노력한다.

또 이를 위한 광범위한 정보 보급을 위하여 역내 신속한 정보채널 구축 목적으로 중앙전산실(Central DataBase)을 설립한다....”

또한 금년 2월 EU집행위 부위원장 Sir 레온 브리坦의 프랑스 전경련에서의 연설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유럽은 유럽이 필요로 하는 역외시장을 개방하기 위하여 보다 공격적인 전략을 구사할 때가 되었다....”

EU집행위는 작년 9월 집행위내 DGI의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반덤핑 부서직원을 80여명에서 150여명으로 확충하여 A/D 조사기간 단축과 조직확대를 통한 효율적 운영 시도하고 있어 향후 반

덤핑명령을 통한 수입규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뉴 라운드 관련해서 EU 집행위는 기존의 CFC 관련 몬트리얼 의정서와 같은 다자간 환경 협정(MEAs)을 WTO내에서 규범화하기 위해 법적으로 무역규제 조치의 도입을 요청하고 있으며 또 모든 무역협정에 최소한의 노동 기준을 포함토록 결의하는 동시에 WTO에서 노동문제를 감시하는 체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② 우리 전자산업에의 파급

효과

위에서 선진국의 통상정책을 살펴 보았듯이 기존의 통상정책을 강화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미국은 반덤핑 뿐만 아니라 우회수출 방지규정을 강화, 적용하는 추세이며 또 USTR내에 무역 협정 이행 감시기구를 상설하여 주고 있는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으며 EU 역시 반덤핑 관련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여 효율성과 적극성을 제고시켜 수입규제의 툴을 강화하는 쪽으로 모색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빈발하고 있는 우회수출 방지규정의 적극 활용은 기존의 해외투자 전략마저 수정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부품업계와의 동반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여파로 볼 수 있다.

전자수출의 약 30%가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선진국의 이러

한 움직임은 규제품목의 수출비중을 올려놓을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일 것이다.

또 하나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 New Round의 파급이다.

CFC, 포장재, 생산공정으로의 확대로 기술적 열세에 처해있는 환경문제와 ILO의 핵심노동기준에 모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의 노동문제 그리고 영업, 유통으로 확대 적용시 심대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쟁정책 문제 또 외국인투자 등에 차별적 요소가 아직도 상존하고 있어 문제가 우려되는 투자규범 등은 우리 전자 산업 뿐만 아니라 전 산업에의 파급과 영향이 심대할 것으로 보여 그 대책이 시급하다 하겠다.

3. 우리 전자산업의 대응방안

가. 통상현안 집행기구의

효율적 운용

(가) 미국

미국에서의 통상관련 행정부처로는 상무부(DOC)가 있으며 특히 대외교역 관련해서는 USTR(미국무역대표부)가 있다.

특히 USTR에는 국내 기관과의 관련부서와 자체사무국, 홍보부서를 제외하고 크게 다자주의 부서군으로 APEC과 WTO 담당부서가 각각 있으며, 상호주의 부서군으로 북미와 유럽지중해와 중남미와 중·일과 아·태담당부서가, 업종현안 부서군으로 산업과 서비스·투자·지적재산권과 농산물담당부서가 각각 업무를 추진하고 있

으며 '90년대에 신설된 부서로는 무역협정 이행감시부, 환경지원부, 재정투자정책부, 무역개발부 등으로 새롭게 떠오르는 이슈에 대한 대비책과 다자간 상호간 교역상의 정책집행부서로 총 직원 150명 규모로 클린턴행정부 출범 이후 모두 견의 대외무역협정을 체결할 정도로 전면에 부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 EU

EU집행위내 각종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 총국(DG : Directorate General) 24개 중 대외무역법 총국인 DGI은 총 80명 규모로 통상현안 문제들을 주관하여 왔다.

그러나 '94년 9월 대폭 손질을 가하여 DG I이 DG I과 DG IA 그리고 DG IB로 확대는 물론 인원도 150명 수준으로 대폭 보강하였다.

주요부서로는 대외경제정책부, 섬유협정 협력부, 지역협력부(독립국가연합팀/ 극동국가팀/ 중·동구팀/ 북미대서양팀/ 지중해·중동팀/ 중남미팀/ 아시아팀으로 분리), 남북협력부, WTO·OECD부, 과학환경부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특히 인원보강과 조직의 확대개편은 향후 반덤핑 규제에도 신속한 처리절차와 결과를 예상할 수 있어 우리와 같은 수출국에는 일종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게 되었다.

(다)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경우 통상현안에 대한 방어적 자세로 집행부처의 분

산을 통한 대외교역국의 혼돈과 전담부처의 불명확화로 상대방의 공격력 분산과 시간벌기에 다소 유리하다고 자평하는 분산체제로 임하여 왔다.

통상산업부

- : 2개국(통상정책국, 통상협력국)
- 통상정책, WTO, 다자협상, 지역협력
 - 미주통상, 아주통상 1, 아주통상 2, 아중동통상, 구주통상

재정경제원

- : 1개국(국제협력관실)
- 부처간 통상업무 조정

농림수산부

- : 1개과(국제농업국 통상협력과)
- 농산물 협상

정보통신부

- : 1개과(정보통신협력국 협력기획과)
- 통신협상

외무부

- : 1개국 (통상국 통상 1, 2, 3과 /통상기구과)
- 분산논리의 한계

WTO체제에서는 각종 제도나 기구들은 공개적일 수밖에 없고 또 투명해야 하는 대전체가 되어야 함으로 예전과 같이 분산시켜 논다고 해서 상대 교역국이 혼돈하거나 상대역을 찾는데 크게 시간이 걸리거나 또는 그 공격력이 흐트러지지 않기 때문에 선진국의 시장개방 압력을 회피시키기 위해 통상업무를 집중식이 아닌 분산형태로 갖고 가는 것은 이제는 한계에 다다른 것이다.

또한 부처간 이견에 대한 조정에 있어서 비효율적인 면이 노출될 수도 있고 부처간 중복되는 부서가 있다면 생산성이 저하됨은 말할 나위도 없으며 현재까지의 통상활동은 수세적이며 방어적이었지만 이제는 선진국의 통상활동이 공격형으로 바뀌어 감으로 우리의 대응력을 약할 수 밖에 없으므로 전환점에 이르른 것으로 보인다.

○ 개선방향

우리나라도 미국의 USTR과 같은 적극적 논리의 집중식 통상부처(대통령 직속기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통상부처의 통합개편에 대한 범국가적 차원에 대한 논의

가 시급하다고 보면 우리도 통합 전담 통상부처가 새롭게 태어나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 공격적 통상전략과 활동에 방어 일변도가 아닌 적극적 통상전략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나. 업계간 협력기반 구축

국내 경제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전자상업계에 통상전담부서를 운영중인 기업은 그리 많지 않다.

현재 우리 진흥회를 중심으로 약 20개의 업체가 통상 전담부서, 수출·기획·마케팅담당부서 등의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민간전자통상협력위원회가 '87년 이래로 약 10년간 운영되고 있는데 역부족인 면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

특히 산업 자체가 복잡, 다양해지면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상황이 빈발되고 있으며 우리 전자산업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백부분을 대학과 연구소에 몸담고 있는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 풀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의 산업도 발전하고 규모도 확대해지면서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찾아내고 필요한 부분들을 한 곳에 묶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